

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

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.

2018년 5월 2일

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 육 장



1.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일자 : 2018년 5월 2일
2.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학교 현황

연번	구분	학 교 명	위 치	보호구역 면적(m ²)		비고 (고시사유)
				절대	상대	
1	예정	(가칭)덕은유치원	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78-21 일원	189,83.96	150,983.73	학교설립예정지 (시설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)
2	예정	(가칭)덕은1초등학교	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11-4 일원	29,328.29	182,159.09	학교설립예정지 (시설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)
3	예정	(가칭)덕은중학교	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35-4 일원	28,394.94	179,369.04	학교설립예정지 (시설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)

3.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

가. 절대보호구역 :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

나. 상대보호구역 :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
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

※ 다만,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가 없는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
으로부터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절대보호구역을 설정

4.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

-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

5.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

-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또는 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문의 (☎ 031-900-2911)

6. 참고사항

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, 지번변경, 지번누락,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